

식민지 조선의 방역대책과 중국인 노동자의 관리

김영수 *

1. 서론
2. 인천의 중국항로와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
3.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
4. 방역사업의 연장선상으로서의 중국인 노동자 관리
5. 결론

1. 서론

1910년 가을 만주지역에서 발생한 페스트는 점차 남하하면서 확산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11년 1월 중순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인 페스트 방역사업에 착수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방역사업을 시작한 시점은 이미 중국에서 페스트에 의한 환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였을 때였다. 환자 중에는 하층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¹⁾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방역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선에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조선총독부는 중국인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차검역을 실시하고, 페스트균의 매개물로 알려진 죽은 쥐를 신고하는 것으로 방역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차검역과 죽은 쥐의 신고는 먼저 외부에서 유입되는 페스트균을 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조선총독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의주와 인천이 방역사업의 중점적 시행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각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120-752

전화: 02-2228-2473 / 이메일: yonsu7766@yuhs.ac

1) 중국에서 시행된 페스트 방역대책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서를 참조(飯島涉, 2000).

각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방역사업이 실시된 1911년 초는 주지하다시피 조선총독부가 통치를 시작한지 반년이 채 안 되는 시점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총독부가 통치 경험에 부족하다는 점, 따라서 조선에 대한 파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페스트가 유행한다는 것은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시기는 병합 이후 여러 가지 신사업을 착수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염전사업, 축항사업, 도시건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여기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동원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이때 실시된 방역사업은 중국인 노동자의 활동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방역사업의 내용 중에 중국인 단속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총독부는 방역사업을 실시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건강검진 및 입국금지라는 조치뿐만 아니라 조선 내에 있는 중국인들의 이동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조선총독부가 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페스트 방역사업을 시행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깊다. 페스트 방역사업이 실시되던 시기는 해빙기를 포함하고 있어, 새로이 유입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봄철에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방역사업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신사업과 방역사업에는 중국인 노동자라는 공통분모가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과 활용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 역시 방역사업의 일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조선의 중국인 노동자층의 형성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1910년대 이후 한반도 화교의 주요 구성원으로 노동자군(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시기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고, 식민지 조선의 중국인 노동자 대책에 관한 연구는 1920-30년대에 집중

되어 있다. 왜냐하면 1920-30년대에는 재한화교중 노동자의 비율이 50-60% 까지 치솟으면서 노동쟁의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²⁾ 그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조선의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역할 및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있어서 1911년의 방역조치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관련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페스트 방역대책에 관한 연구는 몇몇 개가 발표되었다. 선행 연구는 방역대책의 내용 중 쥐잡기 및 중국인의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다루면서 일제의 방역행정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박윤재, 2000; 신규환, 2009, 2012). 박윤재는 조선총독부의 방역대책을 강력한 단속과 쥐잡기 사업을 통해 식민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신규환은 조선총독부가 펼친 방역사업에 대해 강력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선페스트에 대한 방역사업이었으며, 당시 유행하던 페페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분석하였다. 두 연구자가 주장하는 바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의 내용 중에 쥐잡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중국인 단속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는 방역사업의 실시지역의 선정문제, 사업실시의 시기와의 관계를 통하여 조선총독부의 페스트 방역사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중국인의 이동에 대한 단속이 갖는 의미 등을 분석하여 조선총독부의 페스트 방역사업의 성격과 의미에 대하여 조망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 및 신의주를 통한 중국인의 유입 상황과 방역사업의 실시, 조선총독부의 중국인 노동자 단속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질병의 유행과 그 대응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변화의 양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근 연구에서는 한반도에 노동자 군이 형성되기 시작한 이유를 1910년대 이후 일본 제국 공간의 중심성을 향한 중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이주의 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승욱, 2013: 162, 166).

2. 인천의 중국항로와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

인천은 개항 이후 수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라는 이점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또한 인천의 육상교통은 1899년 경인철도가 제물포역에서 노량진역까지 부설되면서부터 발달하였는데, 1901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인천은 조선각지와 연결되게 되었다. 해상교통은 육상교통보다 더 일찍 중국과의 무역에 이용되었는데, 인천이 개항한 후에는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항로가 설치되면서 인천은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오사카(大阪), 그리고 중국의 즈푸(芝罘), 다이렌(大連), 옌타이(煙台) 등을 연결하는 중·일 항로에서 주요한 경유지로 부상하였다. 인천에서 즈푸, 다이렌, 옌타이 등 중국 동북지방의 도시를 잇는 항로 중에는 조선의 진남포(鎭南浦)를 경유하는 것도 있었으나, 대개는 중국의 각 주요항구와 인천을 직접 잇는 항로였다(加瀬和三郎, 2004: 92-94; 류창, 2011: 126-130; 최성환, 2012: 299). 따라서 인천은 중국에서 오는 기선과 범선의 출입이 잦았고, 조선 내에서는 진남포³⁾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게다가 조선의 서해안에 위치한 개항장 중에는 인천은 일본과 중국의 양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부산에 이어 조선 제2의 무역항이 되었다.

항구의 규모가 확대되어가는 가운데, 인천으로 유입되는 중국인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중국인의 이동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과 중국의 각 지역 간에 설치된 항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천과 중국의 각지를 잇는 항로는 여러 개가 존재하였는데, 일찍부터 정기항로가 형성된 구간은 인천-즈푸간이었다. 19세기말 인천이 개항하였을 때부터 이 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다는 것은 개항 당시 인천에 입항한 중국인 상인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1884년에는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이 체결되어 중국상인의 거주지역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인천의 중국인 수는 꽤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인이라고 해

3) 진남포는 평안남도에 속해있는 항구도시이며, 중국과의 해로교통로 상으로는 인천으로 가는 선박의 기항지이다.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 함대의 정박지, 육군의 병참선 기지가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도 대부분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상인이었다. 당시 인천의 중국 상인 중 45%는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항로가 연결된 지역에서 건너온 자들이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해가 갈수록 더욱 강해져 산둥성 출신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이옥련, 2012: 316-319).

이후 무역시장의 확대와 함께 일본과 중국을 잇는 여러 항로가 개통되었다. 1910년대 초에는 5개의 정기노선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던 임시선과 청상(淸商) 정기양행(政記洋行)⁴⁾의 인천-즈푸선 및 다이렌의 송무양행(松茂洋行)의 다이렌-인천-즈푸간의 삼각항로, 그리고 인천-상하이선도 존재하였다. 즉, 인천은 조선·중국간, 조선·일본간, 그리고 일본·중국간을 잇는 항로에서 가장 중요한 기항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이다(平井斌夫, 1912:70-71).

표 1. 1910년대초 인천의 항로
Table 1. Regular and Irregular Routes in the Port of Incheon in the Early1910s

정기항로 및 부정기항로		기항지
정기항로	오사카-인천선(大阪-仁川線)	고베(神戸), 모지(門司), 부산, 마산, 목포, 군산
	요코하마-다이렌선(橫濱-大連線)	갈 때(往時)만 인천에 기항
	고베-북청선(神戸-北靑線)	왕복 모두 인천에 기항
	나가사키-다이렌선(長崎-大連線)	부산, 목포, 군산, 인천, 진남포
	오사카-안동현선(大阪-安東縣線)	고베(神戸), 모지(門司), 인천, 진남포
부정기항로	인천-즈푸선(仁川-芝罘線)	
	다이렌-인천-즈푸선(大連-仁川-芝罘線)	
기타	인천-상하이선(仁川-上海線)	직항로

(平井斌夫, 1912: 70-71)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정기항로는 인천과 중국 산둥성의 무역항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표는 산둥성에서

4) 정기양행(政記洋行)은 정기유선(政記輪船)과 연관된 상업회사로 보여진다. 정기유선은 1905년 설립된 해운회사로 엔타이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동시에 각 연안의 큰 항구의 해운과 장강(長江) 항운을 담당하였다. 1920년에는 무한회사(無限會社)로 개칭하였고, 자본금을 천만원을 늘려 당시로는 최대 화상해운회사였다.

인천 및 진남포로 이동하는 것이 다른 지방에서 이동해 오는 것보다 수월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천은 전통적으로 중국 산둥성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고, 그 중에는 상인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산둥성에서 오는 노동자들은 즈푸에서, 혹은 청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배로 인천 및 진남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육로를 이용하는 산둥성 출신의 노동자들도 있었으나, 그 경우에는 먼저 대련 및 안동으로 이동한 후에 신의주로 들어오는 형태였다(이옥련, 2012: 321). 항로와 거점지역을 보면, 산둥성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많은 수가 배를 이용하였다고 여겨진다.

인천지역의 중국인 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게 되면서 중국인들 중 많은 수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조선총독부측과 민간측의 호수와 인구조사에 따르면 병합 이후의 정주하는 중국인은 2천명 전후였다고 한다(今井猪之助, 1915: 57-59; 加瀬和三郎, 2004: 80; 조선총독부, 1989). 그러나 여기서 집계한 중국인 인구통계는 정주자에 한하여 집계된 숫자이다. 노동자의 경우 많은 수가 정주의 형태가 아닌 이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업현장에 모여들고, 사업이 끝나면 다시 흩어지는 특징을 띠고 있다. 특히 1906년경부터 시작된 인천세관의 매립지 건설, 1907년 인천지역의 염전공사에 더하여, 1911년 4월부터 축항공사가 시작되어 인천지역에는 상당한 노동자가 모여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그 시기의 인천의 중국인 수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정주자보다는 도항자(渡航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08년 기준으로 중국인거주자는 1,600명 정도였으나, 도항자 중의 중국인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표 2〉에서는 1908년과 1909년의 도항자수를 확인할 수 있다. 1908년의 도항자수의 합계는 약 5,800명, 1년 후인 1909년에는 9,500명으로 증가하였다. 도항자의 총수는 60% 이상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항자 중의 대부분은 중국인이고, 그들은 대부분 인천항을 통해 출입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 도항자의 남녀비율을 따져보면, 남성 도항자의 수가 훨씬 많다.

이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 도항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여, 단기거주나 왕래하는 자의 비율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표 3>은 도항자와 귀항자(歸航者)의 수를 연도별로 집계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도항자와 귀항자의 비율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로는 도항자보다 귀항자의 수가 더 많기도 하였다. 이는 일본의 조선통치라는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중국인의 많은 수가 인천에 정주했다기보다 주로 무역상 및 노동자로서 인천항을 통하여 조선에 왕래하였음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1908년과 1909년의 외국인 도항자수(단위: 명)
Table 2. The Number of Out-bound Foreign Passengers in 1908 and 1909 (Unit: person)

연도/분류	도항자 합계		중국인 도항자		인천의 중국인 도항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08년	5,642	194	5,307	105	4,348	68
1909년	9,284	218	8,955	136	4,676	108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에서 재구성)

표 3. 1908년부터 1911년의 조선의 외국인도항자 및 귀항자(단위: 명)
Table 3. The Foreign Passengers from and to Korea from 1908 to 1911 (Unit: person)

	합계		중국인		잡업(雜業)	
	도항자	귀항자	도항자	귀항자	중국인 도항자	중국인 귀항자
1908년	5,836	4,411	5,412	4,118	797	3,734
1909년	9,502	7,107	9,091	6,684	4,499	3,325
1910년	4,798	3,807	4,378	3,442	823	1,572
1911년	3,345	3,259	3,158	3,031	1,865	887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에서 재구성)

한편 신의주 역시 방역사업에서 중요한 지역이었으나, 신의주의 중국인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신의주는 러일전쟁 후 경의철도를 긴급히 부설하려고 하였던 때부터 일본인이 내왕하였던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정차장, 우체국, 세관, 영림창(營林廠) 등이 설치되면서 일본인 및 조선인 인구는 점차 증가하

였고, 중국인 노동자들도 건설현장에 동원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안동현과 마주보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도 기인하여, 점차 중국인의 왕래가 증가하였다(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 1924: 174). 병합 후 신의주의 중국인 인구는 1910년대 중반까지는 평균 1,300명 정도였고, 그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평균 2,700명으로 늘어났다.⁵⁾ 그 중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았음은 직업별 호수표에 잘 나타나있다.⁶⁾

신의주는 철도교통의 부설로 1906년부터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열차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철도부설 관련사업이 수반되고 있었고, 중국의 안동현과의 지리적인 근접성은 중국인들이 유입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에서 1911년에 이르는 시기의 신의주에 재류하는 중국인의 인구 총수는 약 1,000명 인파에 지나지 않았으나, 1912년에는 약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 1924: 174). 이와 더불어 인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재류하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라는 유동인구가 존재하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신의주 역시 중국인의 왕래, 특히 노동자들이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국경을 왕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인이 본국으로 이동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던 인천은 방역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해지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신의주 역시 중국과의 지리적인 접근성과 중국과 조선을 기차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방역사업의 일선에 위치하게 되었다.

5) 1910년부터 1916년까지의 신의주주재 중국인의 평균인구는 1,300명, 1917년부터 1923년까지는 2,700명이다. 1911년 신의주주재 중국인의 총인구가 1,000명을 넘어섰고, 1918년에는 2,000명을 넘어섰다(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 1924: 174).

6) 신의주주재 중국인의 총인구의 조사주체는 1922년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1922년까지는 부청(府廳)이 조사주체였는데, 1923년부터는 경찰서가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사방법 중에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은 호수의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부청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호수를 계산하였으나, 경찰서는 주거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호수는 1,281호에서 478호로 격감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주거를 함께하는 노동자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 1924: 175).

3.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

1) 검역의 실시와 시설의 정비-해항검역을 중심으로

만주에서 페페스트가 발생하여 남하해 오던 1911년 1월,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으로 방역사업에 착수하였다. 가장 먼저 방역사업의 대상지역이 된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중국과 관련이 깊은 인천과 신의주였다. 양 지역은 외국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병독이 침입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검역 실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검역은 1월 14일 신의주의 기차검역, 그리고 인천과 신의주를 죽은 쥐의 신고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1월 18일에는 쥐를 사들여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1월 19일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⁷⁾ 이러한 조치와 함께 의사의 역할이 정해졌는데, 의사는 폐렴, 모세기관지염, 뇌막염, 심장마비, 패혈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단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경찰분서(警察分署), 순사주재소, 순사파출소 또는 헌병분견소(憲兵分遣所), 헌병파견소, 헌병출장소에 신고해야 했다.⁸⁾ 즉, 페스트에 걸렸을 때 발병하는 증세인 발열, 쇠약, 두통, 오심, 구토 및 폐렴이 병발했을 당시 호흡곤란, 흉통, 기침, 혈성 객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페스트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關東都督府臨時防役部, 1912: 279-280).

이와 함께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도 내렸다. 그 내용은 병독오염의 우려가 있는 품목을 정하여 이들 물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⁹⁾ 그리고 첫 방역지침이 내려진 지 약 1주일 후인 1911년 1월 20일에는 인천지역의 해상검역의 일환으로 인천으로 상륙하는 선객(船客)에 대한 규칙이 정해졌다. 그 내용은 내항하는 선객을 3일 동안 일정

7)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월 19일 및 1월 21일 참조.

8)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월 19일 호외, 1면.

9)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월 19일 호외, 1면.

한 장소에 수용하여 격리하는 것과 인천에 격리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1월 21일에는 항만검역에 관한 제령이 발표되었는데, 이로써 육해상의 운송기관에 대한 일련의 방역대책이 마련되었다.¹⁰⁾ 약 일주일 만에 관련 법령 및 규칙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가 이미 만주 페스트의 유행의 궤적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련의 조치는 인천지역의 방역사업에 바로 적용되었다. 조선총독부가 방역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인천경찰서장은 청국영사와 회견을 가졌다.¹¹⁾ 그리고 폐페스트 예방을 위해 경무총감부에서 발표한 ‘페스트예방령’을 신문에 게재하는 한편, 미야타테(宮館) 경찰서장의 담화를 빌려 인천시민에게 페스트 예방에 힘쓰도록 호소하였다.¹²⁾ 그는 이번 유행하는 페스트는 공기로 감염되고, 그 전파력도 왕성하므로 제반의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페스트의 매개자인 쥐를 구제(驅除)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인천과 같은 다수의 청국인이 거주하고 있는...(중략)...한층 주의를 요한다’고 하여 인천항의 중국인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¹³⁾ 그리고 전염병이 만연하는 것은 주로 해륙운수의 편에 의한 경우가 많고, 교통이 빈번한 지역인 경우 더욱 전염병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인천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인천부에서 발표한 유고(諭告)에서는 특히 인천이 대련과 선박의 교통이 빈번하기 때문에 언제 해당 병독이 침입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거론하고 있어, 항로를 통한 병독침입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¹⁵⁾ 또한 산동반도로 이동한 페스트 감염자가 인천과의 정기항로가 마련되어 있던 즈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도 페스트가 유행함에 따라, 인천과 정기항로가 마련되어 있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페스트가 발생하게

10) 「制令第一號」,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월 21일 호외, 1면.

11) 「防疫事務と清國領事」, 『朝鮮新聞』, 1911년 1월 15일, 2면.

12) 「ペスト豫防令」, 『朝鮮新聞』, 1911년 1월 18일, 3면; 「肺ペストと仁川市民の覺悟-宮館署長談」, 『朝鮮新聞』, 1911년 1월 19일, 2면.

13) 「肺ペストと仁川市民の覺悟-宮館署長談」, 『朝鮮新聞』, 1911년 1월 19일, 2면.

14) 「恐るべき肺ペスト(一)」, 『朝鮮新聞』, 1911년 1월 20일, 1면.

15) 「仁川府廳諭告」, 『朝鮮新聞』, 1911년 1월 20일, 1면.

되었다.¹⁶⁾ 따라서 인천에 페스트가 유입될 가능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이러한 페스트의 전파 상황은 조선총독부의 페스트 방역사업의 개시 시점에 대한 궁극증을 풀어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페스트 유행과 조선총독부 방역사업의 개시시점에 대한 개연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페스트 방역사업을 개시한다고 알린 이래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면, 실시 이전부터 방역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방역사업의 개시시점에 대해서는 중국의 페스트 유행지역과 항로, 즉 해상교통과 해항검역의 관련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 대련에서는 1911년 1월 5일에 첫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였고, 대련에서는 1911년 1월 13일 해항검역이 실시되었다(關東都督府臨時防役部, 1912: 2). 이에 따라 대련부두에 출입은 제한되었고, 다이렌 및 뤼순(旅順)에서 출항하는 선박 승조원, 선객 전원에 대한 검진이 실시되었다(關東都督府臨時防役部, 1912: 4). 또한 선박감시소가 설치되어, 정크선에 대한 검역도 실시되었다. 상술한 것과 같이 다이렌과 인천간에는 정기항로가 설치되어 있어, 대련에서 페스트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컸다.

대련을 출발한 선박이 인천에 도착할 때까지 약 3-4일이 소요된다.¹⁷⁾ 대련에서 인천에 도착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해항검역에 제시되어 있는 페스트에 대한 승조원의 정류기간인 10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승조원 및 선객의 건강상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대련에서 검역을 행한 선박에 대해서도 인천에서 다시 한 번 검역수속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했다.¹⁸⁾ 또한 단기간이기는 했으나, 중국에서 조선에

16) "Epidemic Pneumonic Plague in North China," *Public Health Reports* 26 (March, 1911): 298.

17) 「仁川の 船舶檢疫」, 『매일신보』, 1911년 2월 11일, 2면.

18) 대련항 출항선박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인천항에서는 유행지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정선을 명령하여 검역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대련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경우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두 번 검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련의 출항검역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關東都督府臨時防役部,

입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건강하지 않은 자, 혹은 건강한자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3일간 수용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¹⁹⁾ 당시 관동도독부는 조선총독부가 실시하는 방역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조회하여, 관동도독부내에서 발생한 페페스트가 일본국내에 유입되어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태도를 취했다.²⁰⁾ 그 결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항로의 주요한 중간 기착지였던 인천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해항검역의 거점이 인천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대련과 인천이라는 항로상의 거점도시를 통한 병독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일본과 조선총독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해항검역에 관한 건 및 해항검역수속을 발표하고 나서 인천의 검역시설의 설치는 급선무가 되었다. 1911년 1월 18일, 인천에서는 쥐잡기 기구의 설치, 가옥의 청결유지, 가구 및 피복의 청결과 건조, 창상 및 동상의 주의, 의사의 진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페스트예방령’이 내려졌다.²¹⁾ 그리고 월미도에는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소를 설치하는 공사도 시작되었다.²²⁾ 또한 제(諸)방역사업의 실시로 인천의 페스트 예방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신문 지면을 통해 세세하게 알렸다. 그 내용은 병원, 격리소, 살서선(殺鼠船)의 주문, 소독선의 구입, 육상소독장의 설비, 관리(官吏)대기소의 신축, 해상경계의 강화, 수입금지품의 취급방법, 화물운반선 및 거룻배의 격리, 우편물소독, 검역담당자에 대한 장비지급, 검역의 및 고용원의 증원 등으로, 현재 이러한 시설들의 건설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다.²³⁾ 또한 수입금지품 이외에도 일정 정도 격리가 필요한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여 병독의 유입을 막았다. 북청지방에서 수입하는 생활필수품

1912: 126-128).

19) 部令,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월 19일 호외, 1면.

20) 『滿洲ニ於ケル「ペスト」病勢及豫防措置報告』, B-3.11.4.84, 일본외무성의교사료관 소장.

21) 『ペスト豫防令』, 『朝鮮新聞』, 1911년 1월 18일, 3면.

22) 『月尾島隔離所工事』, 『朝鮮新聞』, 1911년 1월 24일, 2면.

23) 『仁川のペスト豫防準備は如斯して成れり』, 『朝鮮新聞』, 1911년 1월 28일, 5면.

인 석탄과 소금, 그리고 사역인부가 그 대상이었다.²⁴⁾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방역시설이 정비되어 가고, 관련 법령이 강화되어 갔으나, 페스트가 유입될 것을 우려하여 만반의 조치를 취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 내에서는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격리소에 격리되는 사람들도 극히 적어, 신속한 검역소와 격리소는 빈번히 사용되지 않았다. 그 한 예로 인천에 세워진 세관격리소에 처음으로 격리자를 수용한 것은 1911년 2월말이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격리 이유도 선객의 몸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승선(乘船)한 시점으로부터 격리기간으로 지정된 10일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²⁵⁾

2) 재조중국인의 단속

위에서는 주로 항만에서 이루어진 검역조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외부에서 병독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이후, 조선 내에서도 여러 방역사업이 실시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쥐잡기 캠페인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도 이루어졌다.²⁶⁾ 1911년 만주에서 유행하던 페스트는 중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의해 전파되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한층 엄격히 실시하였다. 먼저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금지령을 내렸다.²⁷⁾ 이뿐만 아니라 조선 내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도 시행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페스트는 일반적으로 쥐에 의해 전파, 감염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일단 병독이 들어오면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²⁸⁾ 즉, 페스트가 중국인 노동자에 의해 전파된 경험에 따라, 호흡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였던 것

24) 「防役と石炭の揚陸場」, 『朝鮮新聞』, 1911년 2월 1일, 2면.

25) 「初めて仁川の隔離」, 『朝鮮新聞』, 1911년 2월 21일, 3면.

26)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쥐잡기 캠페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27) 「下層民入國禁止令-淸國苦力入國禁止」, 『朝鮮新聞』, 1911년 1월 28일, 2면.

28) 1911년 내려진 페스트 예방령의 내용 참조.

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인 행상인 및 거류지에 거주하는 중국인 노동자 및 거주자의 허가를 얻은 중국인들은 재주증명서(在住證明書)를 항상 휴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²⁹⁾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제5호

‘페스트’ 예방을 위해 당분간 청국인 행상인과 거류지에 거주하는 청국인 노동자 및 메이지 43년 통감부령 제52호에 의해 거주 허가를 얻은 청국인은 관할 경찰서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관서의 재주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본 령(令)을 위반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본 령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명치44년 2월 13일

조선총독부경무총장 明石元二郎³⁰⁾

인용하는 사료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에 대한 재주증명서 발급 및 휴대는 ‘페스트의 예방을 위해 당분간’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들의 이동과 페스트 병독의 전파와의 관계, 즉 호흡기에 의한 페스트의 전파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단속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가 담당하였다. 또한 재주증명서를 휴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치도 추가되었다.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경무부령 제3호

2월 13일 경무총감부령 제5호에 의한 증명서를 소지하는 자는 당 증명서와 동일한 번호를 쓴(黑書) 흰 천(폭 3치, 길이 5치)에 관할 경찰서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관서의 승인 도장을 받아 이것을 바지(袴)의 왼쪽에 꿰매어 부착한다.

본 령(令)을 위반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29) 警務總監部公文,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2월 13일, 1면.

30) 『警務總監部令 第五號』,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2월 13일, 호외, 1면.

본 령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명치44년 2월 13일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경무부장 水間春明³¹⁾

이것은 조선 내의 중국인 단속이 더욱 강화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경무총감부는 조선 내의 중국인에게 증명서를 소지하는 의무를 부여한 데에 더하여 증명서 번호를 옷에 부착하도록 하여, 가시적으로도 중국인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³²⁾ 이 조치 역시 구류 및 과료에 처한다는 처벌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강력한 단속에 해당한다.

위에 제시한 경무부령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령은 경무총감부령이 아닌 도(道) 경무부령으로 내려진 것으로 각 지역별로 실시 시기의 차이가 있다. 위의 인용은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 위치한 평안북도에서 발포된 것으로, 국경에서 유입되는 중국인과 거주중국인을 구별하고, 그들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조치는 2월 13일에 내려진 것으로 그 시기가 가장 빠르나, 그 이후 각도의 지방청에도 공문이 내려져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2월 20일에는 ‘조선총독부 황해도경무부령 제4호’, 2월 25일에는 ‘조선총독부 경상남도 경무부령 제1호’가 발포되었다.³³⁾ 함경북도 경무부에는 다른 지역보다 늦은 3월 5일에 동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바지에 증명서 번호를 적어 붙이는 조치가 폐지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함경북도의 중국인 단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치는 약 1주일 후인 3월 13일로 폐지되었다.³⁴⁾ 만주 페스트의 유행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조선 내 중국인들에게 내려졌던 엄격한 단속 조치는 폐지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³⁵⁾

31) 警務總監部公文,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2월 13일, 1면.

32) 地方廳公文,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2월 17일, 1면.

33) 地方廳公文,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2월 24일, 1면 및 3월 3일, 2면 참조.

34) 地方廳公文,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3월 25일, 4면.

35) 『조선총독부 관보』는 3월 16일자에는 경상남도와 평안북도 경무부령이, 3월 17일자에는 황해도 경무부령이 폐지되었음을 알렸다. 地方廳公文,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3월 16일, 1면; 地方廳公文,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3월 17일, 2면.

조선총독부는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증명서 번호를 옷에 부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조선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통제, 감시하는 시책을 펼쳤다.³⁶⁾ 이 시책은 만주지방에서 신환자의 보고가 잦아들자 약 1개월 정도 운영되다가 3월말에 폐지되었으나, 중국인 노동자의 내지거주허가에 관한 건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선 내에 거주하려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관리, 즉 그들의 주거에 관한 수속은 앞으로 경찰서가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결정되었다.³⁷⁾ 방역사업에서 시행된 중국인 단속 조치는 경찰서가 중국인의 거주와 관련된 수속 일체를 관할하게 하는 체제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조선 내의 중국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4. 방역사업의 연장선상으로서의 중국인 노동자 관리

1) 만주지역 및 조선의 중국인 노동자 관리의 차이

인천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급은 기본적으로는 항로를 통한 중국인의 유입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행지에서 들어오는 자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선박 및 검역소에 수용하여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방법도 동원되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의주를 포함한 국경지역에서는 조선 내의 중국인에게 재주증명서를 발급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중국인의 이동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방역사업으로 촉발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부서가 중국인 노동자의 거주에 대한 수속을 담당하게 되면서 조선 내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방역사업은 1911년 1월 중순에 사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3월 달까지 약 2개월 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데,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방역사업이 3월 달이

36) 이 조치는 관동주(關東州)에서 펼쳐진 정책과도 유사성을 갖는다. 대련에서는 관동주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여행을 하는 경우, 경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關東都督府臨時防疫部, 1912: 4).

37)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3월 14일, 1면.

라는 시점에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만주지역에서 페스트 환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점차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각 지방의 유고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페스트는 여러 감염경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일단 발생하면 호흡기에 의한 전염이 가능하다는 지식에 근거하여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³⁸⁾ 이와 같은 페스트 예방에 관한 지시는 방역사업이 시작되던 시점에만 한정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방역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3월 달에도 여전히 나타났다.³⁹⁾

동 시기 청국정부와 일본 사이에는 방역을 위해 만주와 산둥성 간의 중국인 노동자의 왕래를 금지하는 조치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동하는 노동자의 수가 매년 10만 명 내외나 되므로, 그들에 대한 금지조치를 지속하고 싶기는 하지만 만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두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논의를 하였다. 그 해결책은 중국인 노동자가 상륙하는 곳에 격리소를 설치하는 것이었고, 그 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청국 단독으로는 힘이 부족할 경우, 일본 영사관과 합동하여 일본의 원조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서두르는 데에는 '해빙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다.⁴⁰⁾ 즉,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일본은 중국인 노동자의 왕래는 허가하되, 중국인 노동자 모두를 일정 기간 격리한 후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논의를 시작했을 때는 중국정부와 관동도독부 및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이견이 있어, 산둥지역의 중국인 노동자가 만주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협의를 거친 끝에, 만주에서 일정한 생업을 얻고자하는 것이 인정된 중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동지역에서의 노동을 허가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타 지역으로 노동자를 보내는 것 역시 가능해졌는데, 그 경우 노동자들을 일단 즈푸에

38) 「仁川府廳諭告」, 『朝鮮新聞』, 1911년 1월 20일, 1면.

39) 「朝鮮總督府全羅南道警務部告諭第一號」,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3월 24일, 3면.

40) 「滿洲に於けるペスト防疫の爲の同地方に出入する清國勞動者取締に關する件」, B.3.11.4.90, 일본외무성사료관 소장.

설치된 격리소에 격리시킨 후 각 지역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청국과 일본정부가 산둥과 만주지역의 노동자의 이동문제로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었을 때, 조선총독부에서 내려진 조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거주지와 수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는 페스트 예방을 위해 취해진 조치이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현재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수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즉자적인 대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청국정부와 일본 간에 다루어졌던 노동자 단속에 관한 건과 같이 '해빙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11년은 기존에 조선 내에 들어와 있던 중국인 노동자들 이외에도 다수의 노동자들이 동원될 예정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11년 3월 당시 조선총독부는 차년도 사업으로 1907년부터 시작된 염전공사와 1911년 축항 6개년 계획의 실시를 앞두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인천부, 1933: 715).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 각지에서 시행될 공사에 대다수의 노동자, 특히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페스트 방역사업으로 인해 증명서 발급 등의 수단으로 조선내의 중국인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고, 중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제한 및 건강진단과 격리라는 조치가 취해지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의 활동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만주에서 페스트 유행이 잠잠해져 가고 있었지만,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게다가 다가오는 봄철은 새로운 사업이 다수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입국할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만주에서 페스트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늦가을, 조선에서 방역사업을 시작한 것은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일감을 찾아 몰려오는 중국인 노동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내의 중국인들의 거주상태를 파악하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페스트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였으나, 앞으로 조선 내에서 실시될 공사현장으로 몰려들 대규모 중국인 노동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조치는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

황이었다. 조선에서는 만주지역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중국인 노동자를 격리한 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이 유입되는 노동자에 대한 관리는 취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고용노동자 대상의 변경

그러한 가운데 조선총독부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펼쳐진 염전공사현장에서 고용노동자 구성이 변경되었다. 진남포의 광량만 염전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로 되어있던 중국인 노동자를 조선인 인부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곳의 염전시설은 1907년부터 광량만에 건설되기 시작하였는데, 페스트 방역이 이루어지던 동안에는 동기 결빙으로 공사는 휴지 중이었으나, 해빙과 함께 재개될 예정이었다. 광량만 염전은 조선염전계획 제1기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제1구는 1912년 3월에 완성되었다(前田力, 1926: 345). 따라서 1911년은 가장 활발히 공사가 이루어질 시기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인 노동자를 조선인 인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만주지역에서 페스트가 창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인부 대체가 페스트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광량만 염전공사에서는 중국인 노동자의 모집을 일체 중지하고, 인부는 모두 조선인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⁴¹⁾ 이때 모집한 인원은 1만 명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변경 공지를 내는 것으로 인력을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청부인(請負人)들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임금의 미지불 문제에 대해 선결하겠다고 하였다.⁴²⁾ 그러므로 조선인들은 안심하고 모집에 응해도 된다고 하면서 조선인 인부의 지원을 촉진하였다.

중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조선인 노동자의 그것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페스트 유행이 어느 정도 잠잠해 진 이후라면 경제

41) 「朝鮮人夫一萬名募集」, 『朝鮮新聞』, 1911년 2월 7일, 2면.

42) 상동.

적인 손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했으리라 여겨지는데, 모집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해빙기를 맞이하여 진남포 광량만에서 염전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광량만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주자는 증가하였다.⁴³⁾ 더욱이 광량만의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자가 ‘매일 증가하여 비상한 성황을 보이고 있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해년도 인부모집의 총 규모가 1만 명으로 꽤 컸기 때문에 이주한 인부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봄철을 맞아 3월 이후 만주 지역으로는 다시 중국인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조선총독부는 아직 페스트 종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유입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인부를 대체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령의 제정에서도 나타났다. 1911년 5월에는 ‘관영사업에 청국인 사용금지의 건’이 발표되었다. 이 건의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이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국인 노동자를 사용해 왔는데, 이는 조선인의 생업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의 이행, 피고용인의 대우 등의 문제가 적지 않아 관영사업에는 되도록 청국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⁴⁴⁾ 또한 이들의 역할을 대신할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령이 제정되었다. 그것은 중국인 노동자의 사용금지가 발표된 지 두 달만인 1911년 7월에 제정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건’이었다(朝鮮警察協會, 1920:49). 이는 임금에 따라 옮겨 다니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아 사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노동자의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노동임금의 급등을 막고, 청부인으로 하여금 노동임금과 물건 값을 확실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질적으로는 방역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나, 두 건에 나타난 조항들은 모두 광량만에서 인부를 모집하던 예에서 제시된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방역사업으로 실시된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법령

43) 「廣梁灣戶口增加」, 『每日申報』, 1911년 4월 22일, 2면.

44) 특수한 기능을 보유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독의 재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朝鮮警察協會, 1920: 46-47).

제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조치와 방역사업과의 연관성은 이후 법령의 제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페스트 방역사업이 시작된 것은 1월 중순이나 공식적으로 모든 방역사업이 종료된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3월말 이후 적극적으로 방역사업을 시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사업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페스트 예방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는 것은 방역사업을 개시한 약 1년 후인 1912년 2월말이었기 때문이다.⁴⁵⁾ 이어서 동년 3월에는 염전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규정이 발포되었는데, 규정 중에는 위생과 전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⁴⁶⁾ 이후 1912년 말에는 ‘지나인 거주노동 허가에 관한 건’이 발포되었다(朝鮮警察協會, 1920: 48-1).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방역사업이 노동시장의 고용문제와 노동관련 법규의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명확하다. 둘 간의 상관관계는 조선총독부가 어떠한 방역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방역사업은 크게 병독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국경 및 해상검역의 철저, 쥐잡기 캠페인, 중국인 단속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중국인 단속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입국금지와 더불어 조선내의 중국인들에 대한 이동을 파악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을 단속하는 명목은 ‘페스트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즉, 이것은 중국인들의 이동에 따라 페스트가 유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호흡기를 통한 전염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병균을 가지고 있는 쥐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중국인 노동자의 사용을 꺼리는 데에서 확실해진다.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의 기저에 깔린 의학지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기존에는 조선총독부의 페스트에 대한 의학지식에 대하여 선포

45) 「ペスト豫防ニ關スル警務總監部令廢止」,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2월 26일

46) 「鹽田作業員服務規程」, 官廳事項,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3월 26일, 2-3면.

스트에 대한 지식체계라고 하여, 불필요한 쥐잡기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펼쳤다고 하였다(신규환, 2009). 그러나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당시 신문 기사에는 페스트는 공기에 의해 전파되고, 호흡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행하고 있는 페스트에 대하여 페스트, 또는 폐페스트라고 언급하고 있어 용어가 혼재되는 현상도 발견된다. 또한 선페스트와 폐페스트에 대해 각각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선페스트는 쥐에 의한 감염이고, 폐페스트는 호흡에 의한 감염이라고 분류하여 설명한다.⁴⁷⁾ 이러한 페스트에 대한 혼재된 인식은 방역사업 종사자와 의학박사 사이에서 선페스트와 폐페스트의 차이에 대한 논의에서도 나타난다.⁴⁸⁾

이러한 기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조선총독부는 1911년 당시 유행하던 페스트의 전염경로는 한 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시 페스트 방역사업은 폐페스트 방역=페스트 방역이라는 등식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당면하고 있었던 통치의 강화라는 목적을 설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만주 페스트의 유행은 조선총독부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페스트의 남하와 함께 대련 등의 조선과 관련이 깊은 항구에서 본격적으로 검역이 시작된 것에 발맞추어 조선에서도 방역사업이 시작되었다. 검역시설을

47) 「肺ペストと仁川市民の覺悟」, 『朝鮮新聞』, 1911년 1월 19일, 2면; 「仁川府廳論告」, 『朝鮮新聞』, 1911년 1월 20일, 1면.

48)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을 담당하던 조선총독부의 촉탁의 야마네(山根正次)와 일본 전염병연구소의 기타사토(北里柴三郎)는 페스트 유행의 연원과 전파경로에 대하여 총 14차례에 걸쳐 『朝鮮新聞』에 연재하였다. 쥐에 의한 전파라는 전파경로에 대해서는 방역본부 내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신문을 참조할 것. 「ペスト病に就て」, 『朝鮮新聞』, 1911년 2월 25일-3월 2일; 「山根氏のペスト談」, 『朝鮮新聞』, 1911년 3월 3일-3월 12일.

새롭게 마련하고, 조선 입국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선 총독부의 방역사업은 틀을 갖추어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인천은 해항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방역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외부에서 유입되는 중국인의 수는 제한적이였다. 그러나 만일을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중국인들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조선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수와 거주지역을 파악하여 외부에서 오는 중국인들과 구별하는 작업이 실시되었다. 그 중 중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는 방역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기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1911년 초 조선총독부의 페스트 방역사업은 중국인 노동자의 단속과 관련법령의 정비로 이어져 노동시장의 인력구성을 변화시켰다.

보고에서는 조선총독부가 방역사업과 신사업의 수행에서 발생한 중국인 노동자의 단속과 활용이라는 선택지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당시 방역사업이 갖는 의미를 확대시켜준다. 즉, 1911년에는 한국 병합 직후라는 시기적인 문제로, 아직 중국인 노동자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불완전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질병통제에 대한 확실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선페스트와 폐페스트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짓지 않고 여러 전파 가능성을 가진 인자들을 철저히 단속하는 전방위적인 ‘페스트’ 방역사업을 펼친 조선총독부의 판단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1911년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은 노동시장의 인력구성과 관련 법령 정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색인어: 방역사업, 페스트, 조선총독부, 중국인 노동자, 항로, 검역, 노동 시장

투고일: 2014. 11. 19 심사일: 2014. 11. 26 게재확정일: 2014. 12. 17

참고문헌 REFERENCES

〈자료〉

『每日申報』.

『朝鮮新聞』.

『朝鮮總督府官報』.

조선총독부편, 『朝鮮總督府統計年報』(복각판, 서울: 고려서림, 1989).

『滿洲ニ於ケル「ペスト」病勢及豫防措置報告』, B-3.11.4.84,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

『滿洲に於けるペスト防疫の爲の同地方に出入する清國勞働者取締に關する件』,
B.3.11.4.90, 일본외무성사료관 소장.

Public Health Reports.

〈연구논저〉

김승욱, 「19세기말~20세기초의 인천의 운송망과 화교거류양상의 변화」, 『중국근현대사학회』 50, 2011.

김승욱, 「20세기 전반 한반도에서 일제의 노동시장 관리」, 『중국사연구』 85, 2013.

류창, 「개항이후(1861-1910) 연태무역의 발전과 한중교류」,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1.

박윤재, 「1910년대초 일제의 페스트 방역활동과 조선지배」,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서울: 혜안, 2000).

박윤재, 「한말·일제초 방역법규의 반포와 방역체계의 형성」,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서울: 혜안, 2004).

신규환, 「제1·2차 만주페페스트 유행과 일제의 방역행정(1910-1921)」, 『의사학』 21-3, 2012.

양윤모 역주, 信夫淳平 著, 『譯註 仁川開港二十五年史』(인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사실, 2004).

유승훈, 「20세기 초 인천지역의 소금생산-천일염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3, 2004.

이옥련, 「개항이후 인천의 화교사회와 동아시아 네트워크」, 『동아시아 개항도시의 형성과 네트워크』(서울: 글로벌컨텐츠, 2012).

정지호, 이선희 역주, 加瀬和三郎, 『譯註 仁川開港二十五年史』(인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사실, 2004).

최성환, 「개항초기 목포항의 일본인과 해상네트워크」, 『동아시아개항도시의 형성과 네트워크』(서울: 로벌컨텐츠, 2012).

- 허지스, 세실, 『영국성공회 선교사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신앙과 풍속』, 안교성 역(서울: 살림, 2011).
- 關東都督府臨時防役部 編, 『明治四十三, 四年「ペスト」流行誌』(大連: 滿洲日日新聞社, 1912)
- 今井猪之助他 編著, 『仁川郷土資料調査事項』(仁川: 出版社不明, 1915).
- 飯島涉, 『ペストと近代中國-衛生の「近代化」と社會變容』(東京: 研文出版, 2000).
- 小田内通敏, 『朝鮮に於ける支那人の經濟力』(東洋講座第七輯, 東京: 東洋研究會出版, 1926).
- 松田利彦, 「近代朝鮮における山東出身華僑」, 千田稔, 宇田隆夫 編, 『東アジアと「半島空間」-山東半島と遼東半島』, 思文閣出版, 2003.
- 仁川府編, 『仁川府史』(仁川: 仁川府, 1933).
- 前田力編著, 『鎮南浦府史』(鎮南浦: 鎮南浦府史發行所, 1926).
- 朝鮮警察協會, 『朝鮮警察法令聚(中卷一)』(京城: 朝鮮警察協會, 1920).
- 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 『朝鮮に於ける支那人』(京城: 朝鮮總督府, 1924).
- 平井斌夫, 『最近の仁川』(大連: 滿鮮實業社, 1912).
- Sihn, Kyu-hwan, “Unexpected Success: The Spread of Manchurian Plague and the Response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1910-1911,” *The Korea Journal* 49 (Summer 2009).

-Abstrac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Plague and the Control of Chinese Coolies in Colonial Korea

KIM Youngsoo *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and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eventive measures taken against the plague in colonial Korea, particularly as applied to the control of Chinese coolies in 1911, soon after the annexation.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began preventive measures with a train quarantine in Shin'uju and Incheon in response to the spread of the plague to the Southern Manchuria. Shin'uju had become urbanized due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 and the seaport of Incheon was the major hub for traffic with China. Examining the transportation routes for the entry and exit of Chinese to and from Korea makes clear the reason why the Korea Government General initiated preventive measures in mid-January, 1911.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ried to block the entry of Chinese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and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Address: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02-2228-2473 / E-Mail: yonsu7766@yuhs.ac

Received: Nov. 19, 2014; Reviewed: Nov. 26, 2014; Accepted: Dec. 17, 2014

through the land border crossing with China and through ports of entry, primarily Incheon.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ventive measures, quarantine facilities were built, including a quarantine station and isolation facility in Incheon. It was also needed to investigate the population and residential locations of Chinese in Korea to prevent the spread of plague. A certificate of residence was issued to all Chinese in Korea, which they needed to carry when they travelled.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plague which broke out in Manchuria were removed gradually. However, there was no specific measures against Chinese coolies, those who had migrated from China to work in the spring in Korea. Still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doubt about an infection of the respiratory system. As a result, the labor market in colonial Korea underwent changes in this period. The Government General recruited Korean laborers, instead of Chinese coolies whose employment had been planned. This move explains the Government General's stro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plague and uncertainty in the route of plague infection, which influenced subsequent regulations on the prohibition of Chinese coolies working on the public enterprise sites and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for Korean laborers.

Keywords: Preventive Measures, Plagu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hinese Coolies, Sea Route, Quarantine, Labor Market